

## 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새로 개정돼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중인 「도서관법」에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강조한 것을 볼 때 오늘날 소위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정보격차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비단 법률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식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오늘날 사회현상 중 하나인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정보격차, 지식격차, 문화격차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도서관법」에서는 지식정보격차에 대해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같은 의미 또는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고 어떤 이는 텍스트 형태의 자료는 지식으로, 디지털화 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정보라고 한다.

여기에서 정보와 지식의 개념 차이를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가지 학설과 사전들을 종합해 보면 정보(情報 : information)는 객관화되기 이전의 인식요소, 또는 검증되지 않은 미완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식(知識 : knowledge)은 그러한 정보

들이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수집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정보보다는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서관에 유입되는 정보자료는 그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도서관을 정보제공의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구현이 필요하다며 2000년에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000억 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우리나라 모든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디지털자료실은 도서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코너, 원문DB코너, VOD코너, DVD코너, 영상 및 문서편집코너, 노트북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자료실이 자칫 PC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졌었다. 초기에는 예상대로 인터넷



신 종 원

우리협회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장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장  
jgwonsin@hanmail.net

사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게임, 성인사이트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이트나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특정사이트 접속 차단 등도 감행했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터넷 사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강좌, VOD, 원문DB 이용등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은 정보수집의 게이트 역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시스템들이 노후되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서 지식정보격차는 OECD가입국 중 가장 크다고 한다. 이는 각종 지식정보를 전달할 네트워크는 잘되어 있으나 그 네트워크에 전달할 정보가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잘 발달된 정보네트워크에 다양한 지식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2000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 교체가 시급하다. 둘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최근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시스템의 발전으로 지식정보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정보의 격차는 개인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에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항을 넣은 것은 장애인, 노인, 빈자, 사회적 약자 등 정보습득취약자들을 위해 도서관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제공은 물론 나아가 지식정보습득의 기술까지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지금 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